

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 21호 서식]

육음번호 구성내역서

① 연월일	② 구분	③ 육음번호	④ 부위명	⑤ 이력번호	⑥ 구성개체수 (구성번호수)	⑦ 등급
2021-10-12	국내산돼지고기	L12110125265001	지육	190002201244	5	-
				190002401834		
				190002901016		
				190009904314		
				190051600801		

유의사항

- ① 연월일은 육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, 국내산돼지고기,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③ 육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.
- ④ 부위명은 육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. 다만,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.
- ⑤ 이력번호는 육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.
- ⑥ 구성개체수는 육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.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"5"로 적습니다.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.
-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.

제 20211008-14 호

도축검사증명서

1. 가축의 종류: 돼지 (혹돈: 0두) 이용

2. 두수 및 이력번호: 15 두 (190009904314)

3. 중량: 지육: 1,212 kg 내장 등 기타: kg

4. 작업장명: 제주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(제주LPC)

5. 검인번호: 제주02

6. 도축일자: 2021년 10월 08일

7. 도축의뢰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제2길 21

(성명: 편명식 (주)팜스토리한방)

8. 수입소의 경우

-수출국가명:

-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월 경과 여부:

비고:

9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: 폐기(Kg), 식용외의 용도 전환(Kg)

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1년 10월 08일

검사관 소속: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(서명 또는 인)
성명: 고영건 (수의사면허번호: 9338)

축산법 시행규칙 [별지 제 44호 서식]

발급번호: 1102-10080018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*축산법,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1년 10월 08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: 제주지원

성명: 김미나

신청인	성명	편명식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317-85-08678
도축장	업소명	(주)팜스토리한방	업태유형	업태유형
	주소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제2길 21		043-211-7721
	업체명	제주LPC	등급판정일자	2021년 10월 08일
	소재지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-31		
(단위: 두)				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
190009904314(163)	1			
190009904314(164)	2			
190009904314(165)	1			
190009904314(166)	1			
190009904314(167)	1+			
190009904314(168)	2			
190009904314(169)	2			
190009904314(170)	2			
190009904314(171)	1+			
190009904314(172)	1+			
190009904314(173)	2			
190009904314(174)	2			
190009904314(175)	1			
190009904314(176)	등의			
190009904314(177)	1			
전체: 15두 (1+등급: 3)		1 등급: 5		2 등급: 6
				등의등급: 1



발급횟수: 1건 발행일자: 2021-10-08 17:47:24

*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s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* 납품내역은 "축산법 시행규칙,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회교나 등업견본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